



▶ bidding requirements

입찰정보의 제공이나 입찰서류의 제출절차와 조건 등을 명시한 서류를 뜻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로 이뤄진다.

- 입찰광고 : 입찰공고의 영문표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한다.
 - Advertisement for bid, Notice to Bidders, Advertisement to Bid, Notice to Bid
- 입찰자 지시사항(Instructions to Bidders)
- 입찰초청장(Invitation to Bid)
- 기타 입찰관계서류(Bidding Document)

※ bid와 bidding의 표현상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 bid bond : 입찰보증
- bid date(bid time) : 입찰일
- bid opening(bid letting) : 개찰
- bidding documents : 입찰서류
- bidding period : 입찰기간
- bidding requirements : 입찰요구사항
- bidding phase : 입찰단계

▶ bill of quantities(BOQ)

공사용 자재, 장비의 세부적인 분석과 목록으로 물량

조사서 또는 물량명세서라고 불리운다. 이곳에 기재된 항목별 단가의 합이 공사금액이며, Schedule of Prices와 함께 발주처의 공사대금지불 근거가 된다.

- BOQ상 단가(Unit Price)와 총액이 상치할 때에는 단가가 우선한다.
- BOQ는 Bill of Materials(BOM)이라고도 한다.

▶ bona fide bidder : 성실한 입찰자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입찰은 △ 입찰조건(Bidding Requirement)에 부합되고 △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서명 되고 △ 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입찰이다.

이와 같은 입찰을 bona fide bid라고 하며 이러한 입찰자를 bona fide bidder라고 한다.

- bona fide : 성실하게, 성실한(sincerely, really, in good faith)
- bona fides : 성실, 선의(sincerity, good faith)

▶ bonding capacity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이 있다.

- 시공자의 신용도지수(Constructor's credit

index)

- 보증회사가 시공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보증 금액(the maximum amount of money extended by a bonding company to a constructor in contract bonds)

▶ bonus clause

시공자가 계약종료일 이전에 공사를 완공했을 때 발주처에 의해 지급되는 추가금전을 규정한 계약조항

▶ builder's risk insurance

공사의 수행 중 공사상의 재해를 보상받기 위해 드는 일종의 재산보험

▶ care, custody, and control

책임보험 약관상의 보상제외기준으로서 피보험자(the insured)의 보호나 관리하에 있는 자산이나 여하한 목적에서든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손상은 제외된다는 원칙

▶ cash allowance

어떤 불확정적인 공종의 수행비용을 총당하기 위해 계약서상에서 책정된 금액으로서, 이 금액과 최종비용 간의 차액은 뒤에 계약금액을 재조정하게 되는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반영된다.

▶ certificate for payment

시공자의 공사대금청구(application for payment)

에 대하여 감독관이 발급하는 지불확인서. Certificate for Valuation이라고도 하며 발주처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 certificate of occupancy

관계관청이 건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증명서

▶ change order

건설계약에서 change라 함은 계약상의 설계나 공사 범위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추가(addition), 삭제(deletion 또는 omission, cancellation), 기타의 모든 변경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기본범위(General Scope of the Contract)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계약사항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New Contract)이 된다.

“계약사항의 변경”을 Change order라고 하는 외에 Variation(또는 Variation Order)라고도 하며 전자를 미국식, 후자를 영국식 표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지역별 분류를 없애기 위해 현재는 Mod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취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

예) FIDIC - 제51조 “Variations”

GCBCEW - 제11조 “Variation of Price”[영국
관급공사 계약서]

RC - 제47조 “Changes and Extra Work”[사
우디왕실위원회]

COE - 제48조 “Changes”, “Modification
Proposals”[미공병단]🌀